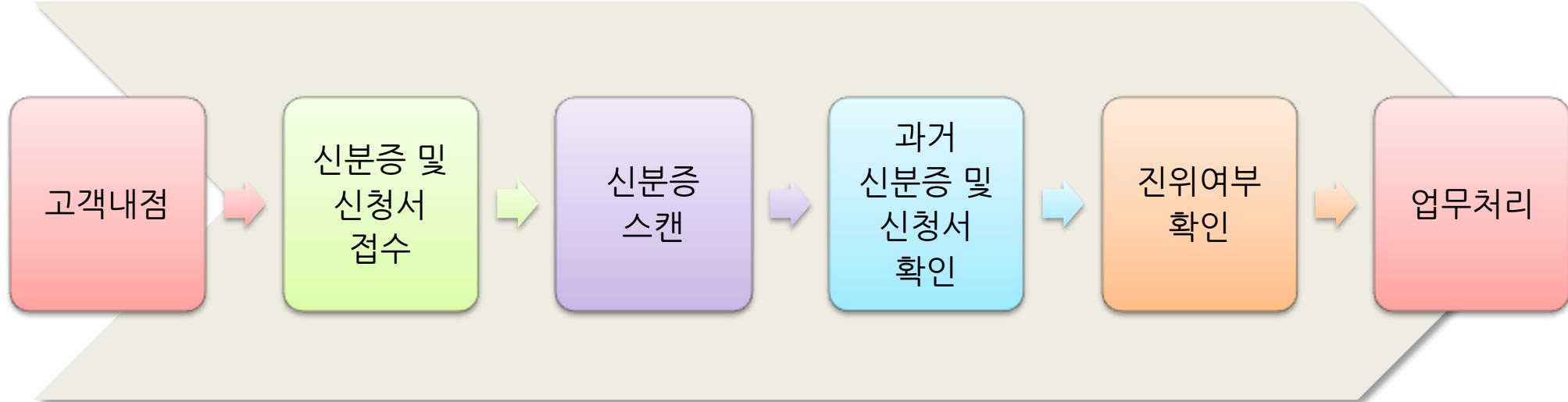


# 제7장 계좌신규





# 본인확인 flow



# 계좌신규시 필요서류

상황	업무양식	징구시기
계좌신규시	•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신규시
유동성 신규시	•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계좌 신규시 개설목적 증빙서류와 함께 징구 유동성계좌 개설 전체 고객으로 15.06.17 확대시행
CDD/EDD 수행대상	• 고객거래 확인서	대상자[7070]전산 자동팝업 ☞ 2016.01.20 개정시행 <b>신규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이행주기 도래시</b>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필요	• [비여신用](공통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최초 1회
	• [비여신用](상품별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공통필수정보 외 추가정보가 필요한 때 상품가입 시 마다
	• [비여신用](상품별 선택)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외국인 고객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법인, 내국인 비거주자의 <b>신규/해지/3년마다</b>
	•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거래신청시
	•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동의서	[7013]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제 도 [과거 FATCA확인서]	• 본인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화면에 팝업으로 알림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	☞ 만 14세 미만 계좌 개설 시마다



# 계좌신규 절차(일반)

## 1. 은행거래신청서 접수

- (1) 고객이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실명증표의 진위여부 등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무를 확인한다.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보관방법

-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실명확인증표 이미지를 보관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복사하여 첨부,보관이 가능하다.
  - ▲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부섭외, 단체신규, 스캐너 장애 등  
신분증스캐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고객정보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기록한다.  
(3) 신규 할 상품종류, 신규금액, 기간, 세금우대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고객번호 조회 및 신규

- ▶ 실명번호로 고객번호를 조회하거나 신규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 3. 전산처리 후 통장 · 증서 교부

# 계좌신규 절차(14세 미만 미성년자, 일괄신규)

## 은행거래신청서 접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시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 징구※ 징구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
  - ② 가족관계확인서류 (금감원 요청에 따른 의무사항)
-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신규 시 본인이 작성한 '일괄 계좌신규 동의서' 징구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일괄 계좌신규 동의서' 징구※ 징구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일괄 계좌신규 동의서
  - ② 가족관계확인서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시 징구) .

### ✓ 가족관계확인서류는 무엇을 징구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과 기본증명서(특정)(미성년자 기준)을 징구하여야 하지만 고객민원 예방을 위해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만 징구하더라도 업무처리 가능함
- 가족관계확인서류로 부모를 확인하였다면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 비여신用 [공통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줄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문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담당자	책임자

(2015.11.13개정)



 신한은행  
SHINHAN BANK

5-900-0174(21.0 X 29.7)

# 계좌신규 절차(14세미만, 일괄신규)

## 만 14 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용)

※ 본 동의서를 징구하는 목적은 만 14 세미만 미성년자 계좌 개설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아울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신한은행 귀중

미성년자	생년월일: 2000년 01월 01일 성명: 홍길동
------	--------------------------------

동의내용	확인
위 미성년자가 귀 은행의 [ 키즈 플러스 통장 ] 계좌 개설하는 행위에 동의합니다.	( )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해지, 사고신고 및 정보변경은 친권을 가진 부모님 모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확인을 위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법정대리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생년월일: 1970년 01월 01일 성명: 홍신미 ( )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생년월일: 1970년 01월 02일 성명: 김한미 ( )
-------	---	-------	---

\* 부모님 모두 친권자인 경우 두 분(부,모) 모두 기재 바랍니다.

담당자	책임자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를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였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 법정대리인 작성하였는지 확인 할 의무는 없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기재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상 부 AND 모가 확인된다면 기본증명서 생략 가능하나, 부 OR 모 일방만 확인되는 경우 기본증명서 징구

✓ 법정대리인이 내점하여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 신규시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Yes!!  
또한, 일방이 내점한 경우 내점한 법정대리인이 미내점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생년 월일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미내점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은 기재하고 성명(인)은 생략 가능 합니다.

# [참고] 주요업무별 징구서류

주요 업무	징구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예금 신규	-	미성년자 기준 일반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인터넷 뱅킹 가입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징구)	<u>미성년자 기준 특정증명서</u>  ※ 상세증명서 지참시에도 업무처리 가능함	미성년자 기준 일반증명서  ※ 친권자 모두와 자녀가 확인 되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 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지참 시에도 업무처리 가능
명의변경(개명) ※ 초본 징구 가능	예금주기준 상세증명서	-
상 속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징구)	피상속인(망자) 기준 일반 증명서	<u>피상속인(망자)기준 상세증명서</u>

가. 미성년자 친권확인은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기본증명서" 징구 ↗ "일반" 증명서로는 친권확인 불가

- 고객이 상세 기본증명서를 제출시에도 업무처리 가능함

나. 상속예금 지급 시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 후 업무처리

↗ "일반" 증명서로는 상속인 확인 불가



# 〈참고〉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유의사항

## 1. 본 서비스로 신분증의 진위확인은 가능하나, 해당 신분증의 본인 여부는 육안에 의해 별도 확인

- 즉, 신분증의 진위확인과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여부 확인은 별개의 사안임
-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해 '정상'의 결과가 있더라도, 신분증의 본인확인은 반드시 별도 진행

## 2. 진위확인서비스의 사진정보의 결과값이 '불일치'하다고 하여, 무조건 위변조 신분증은 아님

- 본 서비스의 사진정보 인식율은 70% 가량임

즉, 통상 주민등록증의 30% 가량은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불일치'로 나올수 있음

## 3. '사진정보 불일치'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증의 나머지 항목이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 업무처리 방법

- 해당 신분증의 사진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거래 고객인 경우 신분증 스캔 화면의 '과거신분증 조회'나 '과거신청서 조회'버튼을 통해 기존 사진정보나 필체를 통해, 본인 확인을 수행
- 다만, 순신규 고객인 경우는 다른 실명증표를 보완적으로 확인

## 4. 본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기존 방식(Site 접속)으로 진위확인을 진행

-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신분증 발급기관을 연계한 서비스인 바, 장애 발생이 가능하고, 장애 발생 시에는 기존의 방식(Site 접속)으로 진위확인

## 5. 사용불가 신분증은 경우는?

- 분실 신고된 신분증, 타인에 의해 습득된 신분증, 회수된 신분증, 사망 또는 말소자 신분증



# <참고>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유의사항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사실 확인	입력항목(확인항목)
주민등록증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24(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확인),</li> <li>ARS(138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li> </ul>
운전면허증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공단(면허증 발급사실 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li> </ul>
외국인등록증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Korea(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 ※ 통합단말 [7013] 화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실명번호 ※ 동의서 징구 필수</li> </ul>

## 외국인신분증 진위확인 동의서

[영어]

I agree that my foreigner's information ( ID information, expiry date, residential qualification ,etc) can be used and be offer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or verification Of a real name and an ID card.

[실명확인 및 신분증진위확인을 위하여 법무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한 외국인정보 (식별정보, 만료일자, 체류자격 등)의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고객확인/Signed by

(서명/Signature)



# 계좌신규 시 유의사항(1)

## 1. 「상품설명서」를 창구비치하고 계좌신규 시 교부

- ☞ 「상품설명서」는 상품의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약관 및 해당상품의 특약의 적용을 받음을 설명(1장. 수신법규관련업무 참조)

## 2. 같은 날 동시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거래신청서」에 의하여 3계좌까지 신규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신규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4계좌 이상 신규가 가능하며 4계좌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신규내역서」를 별지로 첨부

## 3. 신규당일에 적수로 감안되지 않는 타점권만으로는 신규 불가

- ☞ 타점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제외)으로 신규 요청시
  - 유동성 계좌 : 현금에 의한 신규 후 추가 입금 처리 또는 현금과 타점권으로 신규
  - 정기성, 적립식 등 : 별단예금 기타일시예수금에 입금하고 교환결제후 신규처리

### 은행거래신청서 추가신규내역서

예금상품명	종별	계좌번호	금액(계약액)	계약기간	월저축금



## [참고] 예금거래 기본약관

### 제9조(이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 계좌신규 시 유의사항(2)

### 4. 유동성계좌 신규 시 운전면허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에 의한 실명확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1)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http://www.di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단. 기존 거래고객으로서 본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2) 대리인에 의한 법인계좌 개설 시 위임관계 확인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회사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5. 전결권자는 실명여부, 기재사항 등을 확인 후 「은행거래신청서」에 검인

통장의 경우 표제부의 인감란에 검인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증서의 경우 직인 날인 후 교부  
↳ 증서에 은행인과 수입인지세 납부사실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직인날인 생략

### 6. 창구직원 전결권 범위내인 경우는 창구직원이 전결처리

#### ☞ ‘0원 계좌’ 신규시 유의사항

- 1) 신규거래시 ”계좌에 의한 거래의 신규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2)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입금없이 계좌를 개설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입금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3) ‘0원 계좌신규’는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인감. 서명 사용

## 1. 인감과 서명의 사용 방법

- 인감과 서명을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함
-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에 한함 : 거래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본인을 확인(대리인에 의한 거래는 불가)  
↔ 신분증 사본?

만약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명의의 통장을 대리 신규하는 경우  
도장 대신 부모님의 서명으로 통장신규가 가능할까요??



## 2. 인감·서명 없는 계좌개설

- 거래제한 : 인감·서명 신고 전까지 지급 및 이자지급 거래 불가 (무기명식예금 제외)
- 전산처리 : 계좌신규 시 무인감·무서명등록 ► 계좌개설시 무인감·무서명거래는 편의취급 정리대상이 아님
- 인감·서명 없는 계좌의 해지는 무통장(무증서)해지로 처리

## 3. 2이상의 계좌를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통장의 경우 추가신규 요청시 은행거래신청서의 인감·서명 날인 방법

- (1) 단일통장(종합통장)내 상품별 인감·서명란이 별도로 없고 기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기 개설된 계좌의 인감·서명 날인 또는 계좌번호를 기재 <예시> "123-456-789012와 동일"

- (2) 단일통장(정기성 통장 등) 내 상품별 인감·서명 란이 별도로 있는 경우 : 통장과 은행거래신청서에 고객이  
요청하는 인감·서명 날인



# [참고] 기장 - 인감·서명 미신고 계좌신규시 통장 발급 처리

수신 > 기장 > 기장 [8130]

[008130] 수신:기장 >> 기장

계좌번호	_____	은행구분	1 신한은행	BPR 이미지 조회
모개화HD일기				재발급 수수료
고객정보	_____		고객정보 조회	
상품정보	_____		여신기장재발급	
거래구분	30 재발급	이월 후 입금거래시	<input type="checkbox"/> 재발행번호	_____
승인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통화구분	_____
잔액	_____		<input type="checkbox"/> 변경후비밀번호	_____
비밀번호	_____	비밀번호변경시	<input type="checkbox"/>	표체부기장
증서코드	11010047 정기성통장		<input type="checkbox"/>	1 표체부기장
증서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신증서번호
기장라인	_____		<input type="checkbox"/>	거래번호
사고코드	12006 인감폐신고[최초 인감(서명) 신고...]		<input type="checkbox"/>	한글영/영문영
수수료 면제	0 자동산출		<input type="checkbox"/>	수수료면제사유
영수증 발급	0 미발급		<input type="checkbox"/>	고객명출력구분
자동증정/수익증권 자동입출여부		0 미선택	인감구분	1 도장
				1-도장 2-서명 3-도장 & 서명



# 비밀번호 사용(1)

## 1. 비밀번호 사용방법

- (1) 비밀번호 사용 예금 : 무기명예금을 제외한 예금계좌(거치식 및 적립식 포함) 개설시
- (2) 비밀번호는 정당한 예금주임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치 않고 핀패드기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등록한다.
- (3)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 사용
  - ▶ “0000”, “1111” 등 같은 숫자로 된 것과 “1234”, “2345” 등 연속된 숫자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화번호는 사용불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9조)

## 2. 비밀번호 미등록 계좌신규

- ☞ 비밀번호 미등록 계좌신규가 가능한 경우
- ▶ 사업주 · 학교장 등에 의한 일괄계좌 개설
- ▶ 섭외에 의한 신규 등 고객이 핀패드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없는 경우



# 비밀번호 사용(2)

## ☞ 비밀번호 미입력계좌의 유의사항

- 1) 비밀번호 미등록 예금신규와 동시에 현금(직불)카드 발급 불가, **체크카드 발급 가능(뱅킹 출금계좌 등록불가)**  
단. 현금카드 업무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 2)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제휴계좌, 법인계좌는 비밀번호 미등록 신규 불가
- 3) 비밀번호 등록 전까지는 해지, 이자조회, 잔액조회, 지급거래 불가
- 4) 입금, 자동이체, C/C거래, 상계 가능
- 5) 온라인서비스 가입고객에 한해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신규등록 가능
- 6) 창구내점 비밀번호 신규등록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신고를 받고 비밀번호변경 절차에 따른다.

## ✓ '금융IC카드 서비스 > 제2절 현금카드' 업무기준

(나) 사업 추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섭외에 의한 신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계좌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미등록으로 신규 거래하고 고객에게 교부시 PIN-Pad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2014.07.21 개정)

## ✓ C/C거래 : 본부집중일괄처리(Center Cut)

특정일자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입/지급업무를 본부에서 일괄하여 입금 또는 지급처리하고 각 영업점에서는 그 결과를 조회하여 미처리내용에 대한 추가조작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써 거래를 종료시키는 업무처리의 한 형태

## ✓ 상계(相計)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참고] ARS비밀번호 등록 서비스

## 1. 배경

- 가. 고객 미내점 신규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록 관련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지적사항 해결
- 나. 외부 섭외 등에 의한 계좌 신규 시 비밀번호 등록을 위한 적법한 프로세스 구축
- 다. 급여이체 신규 등 외부 섭외 영업 활성화 지원

## 2. 대상예금 : 유동성예금, 정기성예금, 외화(유동성, 정기성)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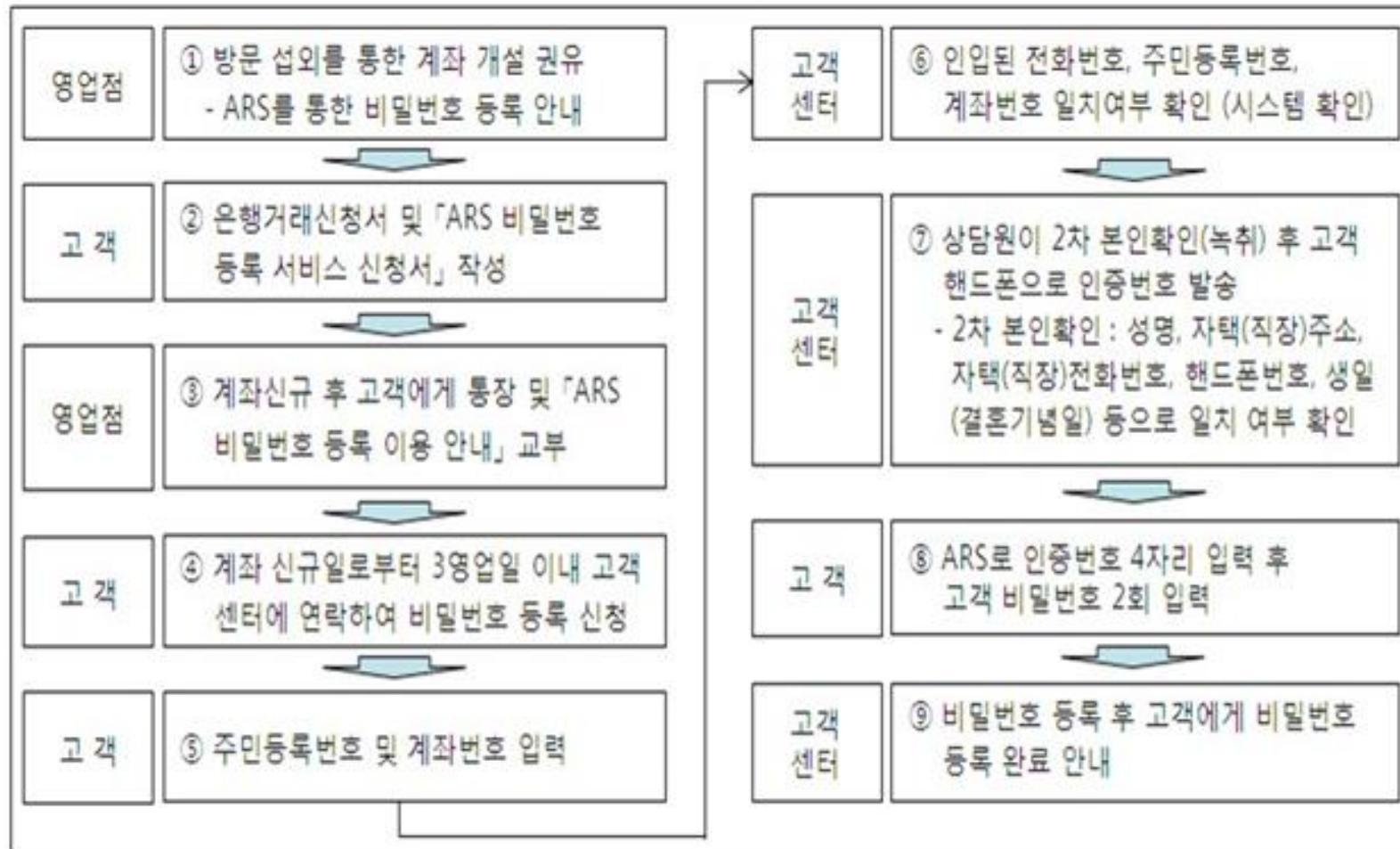
## 3. 대상고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미성년자, 법인 및 임의단체 예금은 신규 불가)

## 4. 기타

- 가.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비밀번호 등록이 불가하므로, 예금 신규 시 은행거래신청서에 작성한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등록할 것
- 나. 은행거래신청서 작성 시 2차 본인확인을 위해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외 직장주소, 전화번호, 생일 등 고객정보를 상세하게 작성
- 다. 계좌 신규 및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만 ARS를 통한 계좌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참고] ARS비밀번호 등록 서비스





# [내부통제] 예금 신규 시 비밀번호 등록 방법 변경 안내

## 1. 변경 대상 업무

- ①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예금의 신규
- ② 업무시간 前(09시 이전) · 後(16시 이후) 예금의 신규

## 2. 유의사항

가.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 및 업무시간 前·後 예금 신규 시 비밀번호 입력계좌는 금감원 종합검사 수검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본인내점"을 정확하게 선택  
 ↪ 본인 미내점 시 반드시 비밀번호 미입력 신규 바랍니다.(대리인 내점시 제외)

나. 섭외 등에 의한 예금 신규 시 **ARS 비밀번호 등록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할 것



As - Is	To -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내점(대리인 내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 입력 신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내점(대리인 내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 입력 + "본인내점" 선택 후 신규</li> </ul> </li> </ul> <p>↪ "본인내점" 미선택 시 비밀번호 입력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미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 미입력 신규</li> </ul> </li> </ul> <p>↪ 펀드, 신탁 상품은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 좌 동 &gt;</li> </ul>



## 예금 지급기일의 산정 > 휴일의 산입

(1) 당초 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첫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당초 만기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 지급

(2) 거치식예금의 만기일이 공휴일인 계좌에 대하여 공휴일의 직전 영업일에 해지요청시 해지일로부터 당초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자를 공제하고 만기해지 처리한다.

→ 다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1개월제 정기예금은 전 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 처리 되지 않고 중도해지 처리됨

→ 비과세 · 세금우대 및 분리과세상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 해지시 이를 만기 해지로 보아 세제혜택 부여함

??  
✓ 예금의 일반원칙 !!  
다시 읽기

(3) 적립식예금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거치식예금과 동일하나, 정기적금, 상호부금은 6개월이상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전영업일 해지시 만기처리되지 않고 중도해지 처리됨

※ 직전영업일 해지불가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 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등 신탁상품, 금융채, 후순위채권, 연금예금 등



# 통장 · 증서의 발행방법

(1) 통장·증서 등의 기재사항은 사무기계로써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은 정정 불가

(2) 예금주의 표시는 약칭으로 할 수 없다.

(3) 증서와 통장에는 소정액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책임자 직인으로 소인한다.

↪ 증서와 통장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4) 통장(증서)의 인감(서명)란에는 전결권자가 검인후 인감보호테이프를 부착하여  
인감(서명)의 오손 및 변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책임자가 소정의 통장(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되, 창구전결권 범위내인 경우는  
창구직원이 전결처리하여 교부한다.

↪ 단,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정기예금, 표지어음, 환매조건부매도는 창구전결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발행한다.

✓ 전자통장, 통장 미발행 ??



# 중요증서의 관리

## 1. 중요증서의 보관·관리

- (1) 중요증서는 서무담당책임자가 내금고에 보관·관리하고, 업무담당책임자는 적정 사용량을 서무담당 책임자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한다.
- (2) 영업시간 중 사용하는 중요증서는 업무담당책임자가 잠금장치 되는 수제금고 내에 보관하고 업무종료 후 수제금고는 내금고안에 보관한다.
- (3) 중요증서는 업무종료 후 매일의 재고를 확인하여 담당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 2. 오류발행된 중요증서의 폐기절차

- (1) 발행시 정정 또는 오손된 통장·증서 및 어음·수표는 전산으로 폐기 또는 서손등록하고 페이드기에 천공 또는 페이드인을 날인한 후 M/S (Magnetic Stripe)를 제거 한다.  
☞ M/S가 없는 경우 제거 생략
- (2) 폐기 또는 서손등록한 중요증서는 폐기 및 서손 내역조회표에 폐기 또는 서손사유를 기재한 후 중요증서 재고현황표에 첨부하여 자점검사 책임자 입회하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폐기 처분한다.
- (3) **중요증서 재고현황표는 문서관리지침의 문서보존기간동안 보관**한다.
  - 가. 폐기 또는 서손등록이 있는 경우 : 1년  
☞ 폐기 및 서손 내역조회표를 첨부하여 보관
  - 나. 폐기 또는 서손등록이 없는 경우 : 3개월

### ※ 서손 vs 폐기

- 해당 증서가 '사용'인 경우  
중요증서 서손 등록  
(중요증서 재고변경 없음)
- 해당 증서가 '미사용'인 경우  
중요증서 폐기 등록  
(중요증서 재고감소)

# <참고> 실물이 없는 계좌들~

## 1. 전자통장

- ✓ 금융IC카드 전용 상품으로 별도의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카드 칩을 이용하여 전자통장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에 대하여 종이통장과 동일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신개념의 통장
- ✓ 당행의 전자통장 브랜드명은 “신한 스마트원 전자통장”이라 한다



## 2. 가상계좌 서비스

- ✓ 당행 입출금계좌의 번호 체계를 갖추었으나 별도의 예금 신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적요 성격의 자계좌
- ✓ 기업고객이 자금 **수납** 또는 **지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이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고, 고객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기업고객에게 자금을 입금하거나 기업고객으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가상계좌는 당행뿐 아니라 타행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하며, 동시에 당사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서비스의 지원도 가능함

# [참고] 자필 서명 방법

## 1. 대리인 내점시

- (1) 개인 : 000의 대리인 000 서명(날인)
- (2) 법인 : (주)△△△ 의 대리인 000 서명(날인)

## 2. 법인의 대표이사 내점시

- (주) △△△ 의 대표이사 000 서명(날인)

## 3. 일괄신규를 위한 대리인 내점시

일괄계좌 개설된 내용을 확인한 서류에

000외 00명의 대리인 000 서명(날인)

□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주 소 사 용 용 도	한글 漢字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본인의 ( )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 생년월일(주민번호 앞6자리) :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 : 동 번지 호 APT 전화번호(☎) : 년 월 일			
동 의 서	본인의 ( )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법정대리인 : (인) 생년월일(주민번호 앞6자리) :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 : 동 번지 호 APT 전화번호(☎) : 년 월 일			
	영 확 사인 관련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재외공관 (영사관) (인) 년 월 일		
※ 유의사항 재외국민이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영사관의 확인인을 받아야 합니다.				





# Voice Phishing !!

## ✓ 전기통신금융사기 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 공갈 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 ✓ 대포통장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며, 차명계좌라고도 한다. 예금통장 또는 현금(직불, 체크)카드 등을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범죄에 이용하였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으며, 대포통장을 제공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체크카드 개설, 대출 신규 등이 거절 될 수 있다.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 파밍 (Pharming) 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

# [참고] 여행자증명서

中華人民共和国 PEOPLE'S REPUBLIC OF CHINA  
旅行证 TRAVEL DOCUMENT  
类别 / Type 签发国代码 / Code of issuing state 号码 / No.  
PT CHN T0043.

姓 / Surname 姓 / Given name  
姓 / Surname  
名 / Given name  
性別 / Sex  
M 出生日期 / Date of birth  
03 Apr. 1968  
由旅地點 / Place of birth  
JILIN 離發机关 / Authority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  
Embassy of the P. R. China in the Republic of Korea  
PTCHNPIAO<<DAFAN<<<<<<<<<<<<<<<<<<<<<  
T004346316CHN6804031100021 IKOOKKORA<<<<<68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문구



说明  
本旅行证为替代护照使用的旅行身份证件，前往世界各国有效。  
二、旅行证的持有人为中华人民共和国公民，由外交部或其授权的外交代表机关、领事馆、外交部授权的其他驻外机构签发。旅行证的签发、换发、补发和加注，由外交部或其授权的外交代表机关、领事馆、外交部授权的其他驻外机构办理。  
三、本旅行证共三十二页，除另有注明外有效期自签发之日起两年有效。本旅行证到期或签证页用完，须换领新旅行证。  
四、本旅行证应妥为保存使用，不得损毁、涂改、转让。旅行证遗失或损毁应立即向附近的旅行证签发机关和当地治安机关报告。

# [참고] 여권

## 대한민국 전자여권

대한민국의 여권은 국제민간행동기구(ICAO)의 Document 9303 권고안에 부합하는 기계판독 여권으로, 외국을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008년부터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신원정보를 저장하고 경지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 ● 여권의 종류



① 일반여권

② 관용여권

③ 외교관여권

### ● 신원정보면 위·변조 방지요소



① 새변환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무궁화 문양의 색상이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함



② 출로그램  
신원정보면을 한쪽으로 기울여보면 필름 이미지 모양과 색상이 변함



③ 미세문자  
유안으로는 분양처를 보이지만 확대 관찰하면 'REPUBLIC OF KOREA'라는 문자가 보임



④ 스테기노그라피(Steganography)  
모두 헌장을 통하여 보면 사진 속에 숨겨진 여권 소지자의 주요 정보가 보임



⑤ 형광 고스트 이미지  
자외선 텁프를 비추면 여권 소지자의 사진의 이미지가 형광으로 보임



⑥ 형광 잉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자 및 문양이 자외선 텁프를 비추면 녹색으로 나타남



### ● 사증면 위·변조 방지요소



⑤ 1234567890

### ● 소지인 연락처면 위·변조 방지요소



### ● 평판미세문자

한국 관찰시 'KOREA'라는 문자가 보임

### ● 번체잉크

회공기풀에 노출되면, 잉크 색상이 변해서 배경문양이 흐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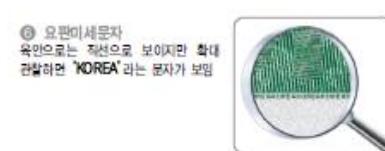
### ● 레이저천장

여권번호를 원주형 레이저로 천공



### ● 요판미세문자

유안으로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확대 관찰하면 'KOREA'라는 문자가 보임



### ● 요판감상

비스듬히 기울이 보면 'KOREA'라는 문자가 보임



### ● 적외선잉크

직선인 텁프를 비추면 요판 이미지 중 일부분만 나타남





# [참고]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록

## 1. 고객확인의무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및 실소유자 여부 확인 등 거래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 2. 거래유형 및 수행업무

### (1) CDD와 EDD

거래유형	저위험 고객(CDD)	고위험 고객(EDD)
계좌개설	구두로 확인 (고객거래확인서 징구로 확인가능)	고객거래확인서 징구 필수 (업무담당책임자 결재)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을 구두로 확인	

- ☞ 일회성 금융거래(7일 합산거래 포함)란 동일한 거래 상대방의 2천만원(외화는 미화1만불 상당)이상이면 해당
- ☞ 계좌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계좌신규, 신용카드 신규, 전자금융신규 등 포함

### (2) CDD대상거래 이외의 실명확인대상 거래시 개별수행업무

- 100만원 초과 무통장 입금, 환전 등 실명확인대상 거래

### (3) 간편CDD시행

- 고객번호를 보유한 고객으로 고객정보 중 중요항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고객(개인/법인)
- 통합단말[7001]고객변경, [7061]고객정보 정비에서 고객정보 중요항목 변경시 간편CDD수행 팝업을 통해 진행되며 별도조치 불필요



# [참고]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록

## 3. 검증

구분(택일)	개인(개인사업자)	법인(단체)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문서적 방법(택일)	복수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허가서 등	복수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당행 국가 정부 발행 신분증(예: 사회보장번호증, 운전면허증 등), 영문이름이 기재된 국내외 신용카드, 국내 재직/재학 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비문서적 방법(택일)	1382전화, 전자정부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본인 음성녹취 등	국세청휴폐업조회, 전자공시(금감원), 당행법인의 홈페이지(외국법인)에 한함 등	경찰청 홈페이지,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확인(고객동의 필요), 본인 음성녹취 등, 기타

## 4. 이행시기

- 고객확인 적용대상 거래가 완료되지 전까지 이행
- 고객확인을 수행한 후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단,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다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저위험 고객은 3년, 고위험 고객은 1년의 재확인 주기를 정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한다.

5. 관련 전산화면 : 7070, 7071, 7072, 7073

# [참고]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상황	종류	내용
고객확인 및 검증	신규고객	저위험 고객(기본정보 확인절차) 고위험 고객( 추가정보 확인절차 EDD)
	기존고객(저위험 고객)	CDD 재확인주기(예:3년)내에서는 고객확인 생략
	기존고객(고위험 고객)	EDD 재확인주기(예1년) 내에서는 고객확인 생략 가능 단, 특이 거래시 등은 거래시마다 재확인(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고객확인의 종류	본인에 의한 본인 고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점한 거래 상대방이 자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내점한 고객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행</li> </ul>
	대리인에 의한 본인 고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점한 거래 상대방이 타인을 위한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경우로 그 타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행 (Ex. 가족대리: 가족관계증명서, 3자대리: 인감증명서)</li> </ul>
	대리인에 의한 대리인 고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점한 거래 상대방이 타인을 위한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경우로 내점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행 (Ex. 대리인의 신분증+ 1382 및 전자정부 홈페이지등)</li> </ul>
개인	신원확인	금융실명제에서 정한 서류
	신원검증	신원확인의 검증서류 (Ex. 외국인경우: 당해 국가 정부발행신분증, 재학증명서, 영문이름 이 기재된 국내외신용카드, 전기/가스/수도요금청구서 등)
법인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대상 고객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금융기관, 상장기업
	실제 소유주 확인	<p>1단계)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2단계) 최대지분 소유자, 임원 과반수 선임자, 그 외 사실상 지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중 1인</p> <p>주주명부, 정관 등 실제 소유자 확인서류를 징구 하여 확인 후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국적]을 기입</p>

# [참고] 법인, 단체별 고객확인서류

단체구분		징구서류		
		신원확인 및 검증 서류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대표자 내점	대리인 내점	
사 단 법 인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실명확인증표</li> <li>- 대리인 실명확인증표</li> <li>-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명부확인서</li> <li>-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li> </ul>	-
	유한회사 합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 명부</li> </ul>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합명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 명부 등</li> <li>-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li> </ul>	
	기타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자 명부</li> </ul>	-법인등기부등본
	재단법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유치원, 아파트관리 사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실명확인증표</li> <li>- 대리인 실명확인증표</li> <li>-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대표자인감증명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이 작성한 고객거래확인서의 실제소유자 확인 정보</li> </ul>	- 정관,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 회칙, (관리)규약, 소속 증명서(종교단체)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 활용 가능



## [참고] 고객확인 금감원 주요지적사항

- 2017년 금융감독원 수검시 고객확인제도(CDD/DDD)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미흡사례에 대해  
건당 1천만원 과태료 부과를 언급함

실제소유자 입력 오류

- 법인(단체)을 최종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 이름을 입력

예시1) 법인명과 동일하게 입력 신한은행 000지점 \_ 신한은행 000지점

예시2) 최대 지분을 소유한 법인명 입력 신한은행 000 지점 \_ 국민연금공단

예시3) 임의의 문자 입력 KIM, YOU 등 임의의 문자를 입력

- ▶ 법상 ‘법인을 최종 지배하는 자연인’을 실제소유자로 등록함
- ▶ 법인이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고객사 A 법인 > B 법인 > C (최종 지배하는 자연인))

고객사 A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니 B 법인이 50%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경우 B 법인의 주주명부를  
징구하여 최종 지배하는 자연인 C를 찾아서 실제소유자로 등록해야 함

A 법인, B 법인까지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였으나, C 또한 법인사로 확인되어 실제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A, B 법인의 주주명부를 첨부하고 고객사인 A법인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음

\* 이 경우 고객사인 A 법인과, B 법인의 주주명부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법률요건)



# [참고] 고객확인 금감원 주요지적사항

■ 2017년 금융감독원 수검시 고객확인제도(CDD/EDD)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미흡사례에 대해  
건당 1천만원 과태료 부과를 언급함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상장법인의 경우만 생략 가능하나 임의로 확인을 생략

예시1) 상장법인으로 오인하여 생략 **삼성세차장**

예시2) 지자체로 오인하여 생략 **구로문화센터 요가교실**

예시3) 임의로 생략 **어린이집, 교회, 아파트 등 생략 대상이 아님에도 생략**

- ▶ **법상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상장법인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이 가능함**
- ▶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단체도 생략이 가능하나 이는 요건이 엄격하며,**  
실무상 [www.alio.go.kr](http://www.alio.go.kr) 또는 [www.cleaneye.go.kr](http://www.cleaneye.go.kr)에서 조회되는 단체에 한정됨
- ▶ 어린이집, 교회, 아파트 관리소 자금은 공공 자금으로 실제소유자는 자금 운영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관, 관리규약 징구 필수)  
(정관, 관리규약 징구 필수 \_ 표지 및 지배구조, 자금 운영에 대한 항목 부분 첨부 (없으면 정관 사본 하단에 수기 기록하여 첨부))



## [참고] 고객확인 금감원 주요지적사항

▣ 2017년 금융감독원 수검시 고객확인제도(CDD/EDD)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아래의 **기타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기 타

● 고객확인 기본정보 미입력 또는 입력 오류

● 개인: 주소, 연락처 / 법인: 영리법인(업종, 업태), 비영리법인(설립목적)

예시1) 전화번호 미확인 1111-1111-1111 (연락처 연속번호 입력)

예시2) 상세 주소정보 미입력 . (상세주소입력 없이 . 또는 공란으로 처리)

예시3) 영리법인 표준산업분류코드 미입력,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임의 등록

▶ 비영리법인은 법인 설립목적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서류를 반드시 징구해야 함

▶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가 표시되어 설립목적을 알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상 아무 표시가 없어 별도의 서류를 징구하여 ‘설립목적’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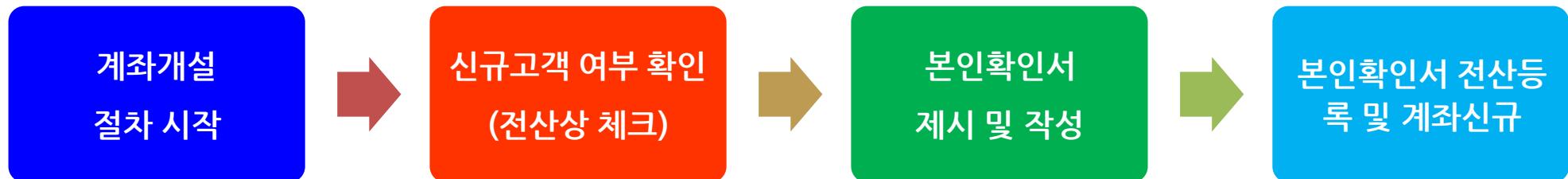
#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제도(CRS)

## 개요

가.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납세자의 정보를 교환

나. 미국 납세자 여부와 미국 이외의 조세목적상 거주자 여부를 추가 확인

※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공통보고기준



해외납세자 정보교환 제도 양식명: 본인확인서

해외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와는 다른 내용임.



#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제도(CRS)

## 2. 영업점 수행 업무

- 신규고객: 16.1.1 이후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고객
- 기존고객: 15.12.31 기준 해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고객  
(국적/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해외로 자동이체 등록 등)

※ 대상상품 : 예금상품, 신탁/펀드상품

## 3. 본인 확인서 작성방법(개인용)-개인 (①과 ② 중복선택가능)

번호	해당 사항	추가 작성
①	미국 납세자 여부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영문성명/주소, 납세자번호
②	한국, 미국 이외에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있는 경우	"
③	①,② 모두 해당사항 없는 경우	없음

※ 미국 이외의 해외납세자가 납세자번호 미기재시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입력 필수임

-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미취득의 객관적인 사유를 입력해야 함.

# 본인확인서 양식(견양)

본인확인서 (개인/개인사업자용)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경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김신한	생년월일	1990.01.01
거주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전화번호	02-756-0506

## 2.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

가. 다음 중 해당란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과 ②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미국 거주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 미국 이외에 국가 또는 지역에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있음			
③ ①, ② 모두 해당사항없음			
나. 가.에서 ① 또는 ②에 표기한 경우 영문성명, 영문주소, 조세목적상 거주지 및 납세자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성(Sur Name) KIM	명(Given Name) SHIN HAN	현대 거주지 주소(영문) 1111 RENAISSANCE AVE #2, SAN DIEGO, CA 92122 USA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영문)	납세자번호 (TIN : SSN 또는 I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 이외의 국가면 작성)	
1 United States	123456789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불요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2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불요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3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불요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3. 본인 확인

-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행에 등지하겠습니다.
- 본인은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인은 보고대상 금융개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계좌(계약)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련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드고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Kimshinhann	성 또는 사명 HAN
대리인 성명	성 또는 사명
관계	

## 작성 방법

### 1. 고객 인적사항

고객님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

- 기에서 ①, ② 중 하나에 표기한 고객님께서는 나의 영어 성명, 현대 거주지 주소(영문),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과 납세자번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번호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번호(SSN/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본인 확인

반드시 본인이 작성일 및 성명을 기재 후, 사명 또는 인감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보관(제작일자)은 은행거래신청서 등에 포함하여 보관하는 경우 생략

- 등록 및 제반경지 시 : 설명회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적 변경시 : 취득국가의 정부발행 신분증 사본, 상설국가의 국적상실증명서



## ★ 대리인이 내점하여 등록시 작성 방법

- 미성년자 거래를 친권자가 거래 시  
: 본인확인란에 친권자 2명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
- 미성년자 거래가 아닌 경우 위임장에 의해 거래 시  
: 본인확인란에 "○○○의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본인확인서 전산등록 방법

통합단말 시스템  
개발환경

화면찾기 | 초기화 | 저장 | 승인 | 완료 | Flow | KOSPI | 월드 | 캘린더 | 계정 | 설정 | 기능 | LOG OUT

업무 i-Flow 마이메뉴  
메뉴를 선택하세요.

[007088] 고객, 고객정보 >> FATCA확인서관리화면 [ 개발 ]

업무구분 1 조회 검색번호 1 고객번호 은행구분 1 신한은행 조회 등록

고객번호 동일인번호 거래자인격  
고객명 고객부기명 실명번호 실명구분  
신규/기존 개인/법인 국적국가 거주지국가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표준산업분류

[개인] [법인] (고객부가정보) (도움말)

■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

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포함)  미국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

② 한국, 미국 이외 국가(또는 지역)에 조세목적상 거주자가 있음

③ 위 ①,② 모두 해당사항없음(한국만 해당)

CLR 개인고객정보  
MIDAS 제안서 팜스마법사

고객번호:  
실명번호:  
고객명:  
고객등급:  
고객확인:  
관리점:  
총수신:  
총여신:  
만월  
만월  
정립 거치 청약 개연 퇴연  
기대 대금 투자(적) 투자(거)  
방카(월) 방카(일) 스마트  
금여 가맹점 미체 카드결제  
마케팅 과제대상 알림정보

2015/12/24 15:20 나라... 나라... FAT X

나라... 나라... FAT X

화면설

<미국거주자 해당유형 선택>

-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포함),  
미국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 중 선택

기존 FATCA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

필수입력  
→ 영문성명, 거주지주소,  
납세자번호  
※ 납세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입력  
(16.12.31까지 가능)  
※ 소재지주소(영문)는 한국주소의  
경우 조회(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주소 입력. 외국주소의 경우  
번지, 거리, 시, 도, 우편번호, 국가  
순으로 입력



#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제도 경과

2014.7.1 FATCA제도 이행 이후,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의거 2016.1.1부터 CRS(공통 보고기준)<sup>2)</sup>가 이행됨(국회비준 불필요)

## 국제법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sup>1)</sup>

- 85개국 가입(한국은 2010년 가입)

- 조세행정 중 정보교환·징수협조에 대하여 협력 범위 및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다수 관할권간 공조협약으로, 개별적인 조약 체결이 없어도 이행준비 완료후 양국간 합의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짐

-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조항 모두 존재

주1)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f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주2)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 공통보고기준

## 국내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 국과 교환할 수 있다.

##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

- 공통보고기준(CRS) 이행을 위한 76개국 서명(한국은 2014.10 협정 서명)  
※ 조기이행그룹(EAG:Early Adapters Group) : 영국주도 조기이행 선언국가(한국포함)
- 2016.1.1 신규고객 이행, 2017.7 국세청 보고를 통한 정보교환 예정

# FATCA와 CRS 비교

CRS는 개인고객의 경우 5만불 기준금액이 없으며, 보고대상 금융정보 중 출생일이 요구되고, 해지계좌는 계좌해지 사실만을 보고함

		FATCA (한·미 협정)	CRS (공통보고기준)
보고대상 계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준) 5만불 초과 (보험·연금은 25만불 초과)</li><li>(신규) 모든계좌 (보험·연금은 5만불 초과)</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금액관계없이 모든계좌</li></ul>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준) 25만불 초과</li><li>(신규) 모든계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좌 동)</li><li>(좌 동)</li></ul>
보고대상 금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름, 주소, 납세자번호</li><li>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 가액 *계좌 해지시 해지 직전 금액</li><li>이자·배당 등 발생소득, 관련자산의 매각 ·상환으로 발생한 총 거래가액</li><li>(예금계좌) 지급이자</li><li>(그 밖의 계좌)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출생일</li><li>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 가액 *계좌 해지시 해지 사실</li><li>(좌 동)</li><li>(좌 동)</li></ul>
기준일/이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4.6.30 / 2014.7.1</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5.12.31 / 2016.1.1</li></ul>
정보교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매년도 전년도말 정보를 상호교환 (최초 정보교환 : 2016.7.31 국세청 보고)</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좌 동) (최초 정보교환 : 2017.7.31 국세청 보고)</li></ul>

# 납세자번호 예시(중국, 미국)

## ○ 법인 등 - 과세등기증 (기준 TIN)



## ○ 법인 등 - 영업허가 (개정 TIN)



## ○ 개인 - ID카드



## TIN의 구조(중국)

법인 등의 경우 기준형식 15자리,  
개정된 형식은 18자리로  
구성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18자리로 구성

## 납세자번호(미국)

- (1) SSN: 사회보장국에서 개인에게 발급  
(XXX-XX-XXXX 형태를 지님)
- (2) EIN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법인 및  
그밖에 단체에 발급  
(XX-XXXXXXX 형태를 지님)
- (3) TIN은 세무 처리용 번호, SSN 가 없고  
SSN발급 받을 자격 없는 개인에게 발급  
(9XX-XX-XXXX 형태를 지님)

## Q&A)

복수의 과세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고객  
(행추가를 통해 납세국가 추가등록)

단순히 국적으로만 판단하여, 납세확인이 아닌  
실제 고객에 문의하여 납세번호 작성